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에 있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삭제 및 조문 정비(현행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7항”을 “법 제55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u> <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태풍·강풍·풍랑</u>	<u><삭 제></u>

및 도시계획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중앙부처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③ 사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
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제17조의3(사전심의위원회 위원
의 임기 등) ① 제17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
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
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
거나 특정 기업에 이익 또는 손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
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그 심

<삭 제>

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① 시·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5항-----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① -----
법 제55조제8항-----

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 5. (생 략) ② (생 략)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